

女子司書의 就職이 왜 低調한가?

朴 萬 均
東大圖書館司書主任

大學을 졸업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社會生活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工夫하는 곳」에서 「生活하는 곳」으로 ; 研究하는 時期」로부터 「應用하는 時期」로 轉換하기란 形而上學으로부터 形而下學으로 移轉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生活이란 곧 職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大學은 자기의 人生航路의 海圖를 設計하는 時期라면 社會生活은 그航路에 따라 航行하는 時期라 하겠다. 自己가 선택하여 定한航路에 따라 生活風土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大學을 진학할 때 大學의 선택보다도 學科選擇에 더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學科의 선택은 곧 人生의 선택이라 하리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경향을 보며는 도서관학과 학생들중에 도서관학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후에 一生活風土로 향하는 船舶의 수는 量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탁상 실사회에 나와서 자기의航路를 찾아가야 할 곳은 해마다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은 여자들의 경우에 더욱 심한 것 같다. 그 래도 남자들은 그런데로 취직이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남자와 똑같은 正司書 또는 準司書資格證과 司書教師資格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직이 남자를 보다 잘 안 되고 있어서 도서관학과를 선택한 것을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도서관학을 이수한 자 가운데 남자보다 여자의 수효가 더 많기 때문에, 취직 자리는 보자리고 해서 여자보다 남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 따라서는 여자는 취직 후 몇 년 지나면 결혼하고 그만두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장차 전문적 사서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애당초부터 여자사서의 채용을 꺼려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도서관의 실태를 보며는 관종별 도서관증 가장 그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대학도서관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사서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전문적 사서

의 수보다 비전문적 직원수가 오히려 많은 도서관이 있는가 하며는 사서직원이 전혀 없는 도서관까지 있는 것 같다. 대학도서관의 경우가 이러할 때 하물며 기타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집계에 의하면 1977년 말 현재 전국 도서관수는 관종별로 볼 때 공공도서관이 106개관, 대학도서관이 144개관, 고등학교 도서관이 881개관, 중학교 도서관이 975개관, 특수도서관이 107개관, 국민학교 도서관이 2,136개관으로 도합 4,349개관이나 된다. 그만큼 많은 도서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자격증소지자들이 금년 들어 취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 운영상 빛인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학이 도입된지 20여 년 동안에 도서관학과 및 특수과정 단기 강습과정 출신들까지 합해 배출된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4,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숫자는 전국 도서관수 4,349개관에 사서직 한명 끌밖 에 안 되는 숫자이다. 그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사서의 경우 취직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송의여자전문학교 도서관학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체 졸업생들의 거의 100%가 취직이 되었는데 근년 들어서는 현저히 취직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송의여전의 경우마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대학 도서관학과 출신들도 과거에 비해 취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로는 표면상 전국적으로 도서관수는 많지만 그 중에는 有名無實한 도서관들이 너무 많다는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도서관 가운데 개인 장서만도 못하는 도서를 비치해 두고 있는 「도서관」(?)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서관들이 도시보다는 지방에 갈수록 많은 것 같다. 특히 전국 도서관수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

는 學校圖書館의 경우에 더 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學校圖書館 중에 「圖書館設置基準」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증거이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재정난 때문에 「학교도서관 설치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많겠지만 그보다는 학교 경영자들 중에 아직도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어찌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같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교 경영자들이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현재 학교도서관중에는 비전 문직 직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다.

이상에서 말한 몇가지 이유 때문에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취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학교 경영자들이 학생들의 自律學習의 實現을 위하여 만들었던 당초의 학교도서관의 설립 목적과는逆行하는 처사가 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 그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서관법 제6조를 보며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 및 운영

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6조에는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실업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에는 사서직원을 두어야 하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사서교사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도서관수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실태가 이처럼 당초의 설립 목적과는 반대로 형식상의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도서관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교부는 전국적으로 비단 학교도서관의 경우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까지도 그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도서관 설치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아직까지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강력한 어떤 행정적 조처를 취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도협」에서도 차제에 도서관법 및 동시행령이 死文化되지 않도록 동법의 미비한 條項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어떤 개정 작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各図書館必携의 參考文獻

ESTATE BOYDN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WHO'S WHO IN AMERICA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THE SPANKINS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를 拜受하고 있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沢文社

大韓總販 153-33